# 계약자(이하 '회원'이라 한다)와 보람상조개발(주)(이하 '회사'라 한다) 는 신의성실로 다음과 같이 상조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이 계약은 보람상조개발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이 매월 일정액의 납부 의무를 지고, 회사는 장의·웨당 발생 시 약정된 용역과 이에 부수한 물품(이하 '상조서비스'라 한다.)을 제공하는 의무를 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금전이나 금리의 지급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 제2조 (회원의 가입)

- ①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고객은 회사 소정의 계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한후 이를 회사 또는 모집인(회사를 위하여 상조서비스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 회원 가입을 신청하고, 가입하고자 하는 상품에 따른 1회 이상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② 회사가 제1항의 회원 가입 신청을 승인함으로써 이 계약이 성립하고, 회원은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등 본 계약상의 권리를 갖는다. 다만, 회사가 회원 가입을 신청한 고객으로부터 1회 이상의 납입금을 받은 때에는 회원가입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 ③ 회사 또는 모집인은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고객이 회원 가입 신청 전에 약관의 주요한 내용을 설명하고, 약관이 첨부된 회사 소정의 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가입자가 납입한 월 납입금의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④ 가입절차를 완료한 회원에 대하여 회사는 회원증서를 교부한다.
- ⑤ 회원이 회원증서의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회원증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교부된 회원증서 는 무효가 되다

#### 제3조 (단체회원의 계약)

- ① 제2조는 법인 기타 단체의 명의로 복수의 인원이 집단으로 가입할 경우에도 준용한다. ② 단체의 구성원 중 상조서비스 대상이 되는 회원에 대한 개별적인 가입이 힘들거나, 개별적인 회원자격을 인정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회사는 해당 단체의 구성원에게 포괄적인 회원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 ③ 포괄적인 회원자격은 소속단체별로 가입구좌수에 따른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선택권은 소속단체장이 행사한다.

# 제4조 (청약철회권의 행사)

- ① 회원(제2조 제1항의 회원 가입을 신청한 자를 포함한다.)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권을
- ② 제1항의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청약철회권을 행사한 회원에 대하여 회사는 철회의 서면을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금을 반환하며, 회원은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회사가 위 3영업일 내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입금에 대해 연15%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 제5조 (계약상품, 납입금, 납입방법, 납입종별)

- ① 회원은 계약체결 시 상품설명서 또는 제3항의 계약상품을 선택하여 상조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② 회원은 이 계약에 따라 가입 시에 정한 납입금을 CMS계좌이체 방식, 신용카드 등에 의해 매월 약정한 기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상조서비스 상품의 종류 납입기간 및 납입금 납입방법 납입종별은 다음 표와 같다

계약상품	납입금액 (개월)	납입방법	납입종별
580만원	18,000원 X 323개월 (323회차는 4,000원만 납입)	이체(CMS)/	매월납/연납/
	25,000원 X 232개월	카드승인	일시납

- ④ CMS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입금은 금융결제원 CMS이용약관을 준용하고, 상품대금 연체 시 납입금은 별도 통보 없이 자동출금 한다.
- ⑤ CMS계좌이체를 해지하고자 하는 회원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하여 회사의 지점을 방문하여 CMS계좌이체 해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⑥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의 납입금납부증빙내역에 대하여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의 납입금납부증빙 내역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잘못된 내역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납입금을 CMS 계좌이체, 신용카드를 통하여 납부한 경우 '거래원장 또는 입금확인서'는 영수증에 갈음한다.
- ⑧ 회사발행 영수증에 회사의 도장이 찍힌 수납인영이 불분명하거나 영수금액이 임의로 수정된 경우 등 영수증이 위·변조되었다고 상당한 의심이 되는 경우 해당 영수증은 무효처리 한다.

# 제6조 (상품전환)

- ① 상조서비스에 기입한 회원은 필요시 회사의 승인을 받아 여행서비스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여행상품과의 차액이 발생할 경우 추가로 납부 하여야 한다.
- ② 회원이 여행서비스로 전환하였을 경우 회원은 여행서비스 약관의 적용을 받는다.

# 제7조 (잔여 납입금의 납부)

- ① 회원은 납입금의 완납이전에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아래 시기까지 잔여 납입금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② 회사가 상조서비스를 제공하였음에도 회원이 잔여 납입금을 제1항의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상조 서비스를 제공한 날(장의 또는 웨딩식이 종료한 날)부터 연15%의 지연손해금을 배상한다.

# 제8조 (주소변경 및 통보의무)

- ① 회원은 회사에 알려 준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을 15일 이내 회사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② 회원이 주소 및 연락처의 변경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종전에 신고 된 주소 및 연락처로 통지함 으로써 통지의무를 면하게 된다.

# 제9조 (상조서비스의 이용)

- ① 회원 또는 회원이 지정하는 자는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 ② 회원은 계약상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기존상품보다 상품금액
- ③ 회원이 상조서비스의 제공을 요청한 후 가입 상품금액보다 높은 가격의 상품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에 앞서 회사와 협의하여 추가 납입금을 결정하고 변경할 수 있다.
- ④ 상조서비스는 원칙적으로 1구좌 당 1회에 한한다.
- ⑤ 회원이 본 계약상의 물품이나 서비스 중 일부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대금 공제혜택은 없으며, 이용하지 않는 물품이나 서비스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한다.
- ⑥ 회사가 장의서비스를 개시한 후 장의서비스가 취소된 경우 장의서비스를 요청한 회원은 다음과 같이 출동비, 수시, 초렴비, 고인이송비를 각각 남부하여야 한다.

- 비고 구분 취소 시 금액 (출동비)출동 후 취소 시 700.000원 (수시, 초렴비)수시 또는 초렴 후 취소 시 500.000원 (고인 이송비)임종지에서 행사장소까지 500 000원 소형 장의차
- 회원이 웨딩서비스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회사와 회원은 구체적 서비스의 내용을 담은 세부계약서를 작성 하며, 월 납입금을 완납하지 않은 회원은 세부계약서 작성 시 월 납입금과는 별도로 상품금액의 10%를 보증금으로 선납하여야 한다(웨딩서비스 종료 후 보증금은 웨딩서비스 대금에 충당된다).
- 웨딩서비스의 제공을 요청한 회원이 위 세부계약서 작성 이후부터 본 예식 전 웨딩촬영 직후까지는 아래의 비용을 지급하고, 웨딩서비스의 제공요청을 취소할 수 있다.
- 1. 세부계약서 작성 후 취소 시 : 상품금액의 10% 2. 웨딩촬영 직후 행사 취소 시 : 상품금액의 50% ⑨ 회원이 지정한 시설의 사정으로 상조서비스의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회사는 회원과 협의하여 근거리 유사한

# 수준의 시설에서 상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 (단체계약과 상조서비스)

- ①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가 구성원들을 위하여 상조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단체의 구성원들은 계약된 구좌수 만큼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② 구성원에게 이용권 및 이용서비스를 부여하는 것은 계약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라 소속단체장이 결정한다.

# 제11조 (상조서비스 제공지역)

- ① 회사가 제공하는 상조서비스는 계약 시에 예정된 지역에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의 사정으로 서비스 최저가 제공이보, 호스타이트스 대극 사에 제공한 전국에서 제공되고 본국으로 하다. 표시되자 8—표 사이드 제공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을 명시하여 변경지역과 그 적용일로부터 2개월 전에 해당지역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회사의 상조서비스 제공 지역은 국내(남한)의 내륙 전지역, 제주도內, 내륙과 교량으로 연결된 도서지역으로 한다.]
- ② 이사 등 회원의 사정으로 상조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지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회사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단, 그로 인하여 추가되는 실비는 회원의 부담으로 한다.
- ③ 회사가 서비스 지역을 변경함으로써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된 회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원의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이 납부한 납입금 전액과 납입금에 대하여 각각 그 받은 날부터 신청일까지 상사법정이율(연6%)를 가산하여 반환하며, 지연 시 연15%의 지연이자를 지급 하여야 한다

#### 제12조 (상조서비스의 내용)

- ① 상조서비스는 계약 시에 상품별로 확정한 내용대로 제공되어야 한다. 단, 회사는 확정된 물품 중 시간의 경과로 인한 단종, 품절 등 대상품목의 물품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 시의 확정된 물품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 ② 제1항의 회사가 제공하는 상품별 상조서비스의 내용은 회원증서에 명시하여 교부한다.
- ③ 상조서비스 계약서와 약관 및 상품설명서는 일체를 이루며 회원은 그 내용에 따라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 제13조(보람이용권 제공)

회사는 본 계약 체결 후 회원에게 100만원 상당의 보람이용권을 실물 또는 모바일로 제공할 수 있다.

# 제14조(부람이용권 사용)

- ① 본 계약이 유지 중인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100만원 이내에서 보람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다.
  - 1. 본 부금상품으로 장의, 웨딩, 크루즈 이용 시 행사 할인
  - 2. 당사 주얼리 제품 별도 구매 시 대금 할인
  - ※ 본 이용권은 여타 할인조건과 함께 사용할 수 없으며, 상세사항은 별도 안내문에 고지함.
- ② 제1항 제1호[장의서비스 대금 할인]의 경우 선수금을 납부 중인 회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할인받고 남음이 있는 경우 제1항 제2호[제품 대금 할인]에 사용하거나 당사 부금상품에 추가 가입 후 제1항 제1호에 재사용할 수 있다. 단, 잔여 이용권 사용기간은 첫 할인 후 5년 간으로 한다.
- ③ 제1항 제2호(제품 대금 할인)의 경우 별도의 개인 비용으로 주얼리 구매 시 사용하는 것으로써 선수금 완납 여부와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다. 단, 이용권 사용기간은 납입 만기 후 5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보람이용권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 1. 제공한 이용권을 이미 사용한 경우
  - 2. 발급 이력이 없는 이용권인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된 경우
- 4. 절도, 해킹 등으로 불법 유출된 경우 5. 사용할 부금상품이 없음에도 제1항 제1호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제15조(보람몰 이용)

- ① 보람몰이란 상조서비스를 체결한 회원에게 회사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이며, 상세 사항은 별도 안내문에 따른다. ② 보람몰이란 상조서비스를 체결한 회원이 계약 유지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다.
- ③ 제휴사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혜택과 이용 기간은 달라질 수 있다.

# 제16조(사은품 위약금)

# 제17조 (회원의 채무불이행 효과)

- ①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납입금의 납부를 지연한 경우에는 그 지연일수에 연1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② 회원이 3회 이상 납입금의 납부를 연체한 경우 회사는 서면으로 납입금과 지연이자의 납부를 최고하고, 회원이 위 최고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납입금과 지연이자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는 직권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원은 제15조 제2항의 해약환급금 산식에 따라 계산한 해약환급금을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약환급금 청구권은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위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제18조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 ① 회원이 상조서비스 상품을 이용할 의사가 없을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② 회원의 사정으로 해지된 경우 회사는 회원의 납입금에서 모집수당, 기타 관리비 등을 공제한 아래 산식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회원의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환급기준은 공정거래위 원회의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지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 따른다).

# **13 보람상조개발(주)**

구분	구분 [580만원 상품] 환급율 및 해약 환급금 (단위 : 원)					비고		
	회차	1~16회	17회	50회	100회	200회	232회	만기시 86.37% 환급
232회	환급율	0%	4.60%	62.84%	77.84%	85.34%	86.37%	
	환급액	0	19,590	785,560	1,946,120	4,267,241	5,010,000	
	회차	1~22회	23회	100회	200회	300회	323회	만기시
323회	환급율	0%	2.30%	72.00%	82.40%	85.90%	86.40%	86.37%
	환급액	0	9,370	1,296,200	2,967,410	4,638,620	5,010,000	환급

#### 환급금 = 납입금 누계 - 관리비 누계 - 모집수당 공제액

- 관리비 = 납입금의 5%(총 관리비 상한 50만원)
   모집수당 = 계약대금의 10%(상한 50만원)
- 모집수당 공제액 = 모집수당 X 0.75 + 모집수당 X 0.25 X

기납입금액 총상품금액

- ③ 회원이 회사의 정책에 따라 납입금을 할인받았을 경우 제2항의 해약환급금은 회원이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2항의 해약환급금 산식을 적용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계약 이후 기초생활 수급자가 된 경우, 납입금 전액을 환급한다.
- ⑤ 회원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에 연 15%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에 따라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아래 '표'와 같이 회원 본인 또는 대리인은 신분증을 회사에 제시해야 하고,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구비서류	제시서류
회 원	해약신청서(회사양식), 회원증서(증서확인서), 환급금대리계좌수령시(대리인확인증, 통장사본)	신분증
대 리 인	해약신청서(회사양식), 회원증서(증서확인서), 위임장, 인감증명서(회원)	신분증(회원, 대리인)

⑦ 회사가 자기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조서비스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 보람상조 고객만족센터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9조 (회원지위의 양도 · 명의변경)

- ① 회원은 상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회사의 동의를 얻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회원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권리 의무 등 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하고, 회원지위의 양도 · 명의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회원 지위의 양도 · 명의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아래 '표'와 같이 회원 본인 또는 대리인은 신분증을 회사에 제시해야 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구비서류	제시서류(접수자 확인 必)
양 도 인	명의변경신청서(회사양식), 회원증서(증서확인서)	신분증
대 리 인	위임장, 인감증명서(양도인)	신분증(양도인, 대리인)
양 수 인	명의변경신청서(회사양식)	신분증
대 리 인	위임장, 인감증명서(양수인)	신분증(양수인, 대리인)

# 제20조 (계약의 종료)

- ① 이 계약의 종료는 상조서비스 제공 완료시점으로 한다.
- ② 회원이 상품대금을 완납한 후에도 본 계약은 종료되지 아니하며, 회사는 여전히 회원에 대하여 본 계약에 따른 상조서비스 제공의무를 진다.

# 제21조 (문의 및 상담)

- 이 계약과 상조서비스에 대한 불만 또는 문의 · 상담은 아래 장소에서 한다.
- (보람상조 대표전화: 1588-7979 / 장의 발생 시: 1577-1009 / 웨딩행사 상담: 1688-2525)

# 제22조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 ① 이 계약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와 회원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회원은 소비자 기본법 등에 따른 분쟁 조정기구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중재법 등에 따라 운영 중인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소재지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 이 약관은2021년 3월 1일 부터 체결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 〈소비자 피해 보상 내용〉

- 1. 회사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한국상조공제조합과 매년 1년 단위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 고 있으며, 총 선수금의 50%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 2. [보람상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안내] 2010년 9월 18일 개정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보람상조는 한국 상조공제조합(www.kmaca.or,kr/대표전화 1688-0972)과의 공제 계약 체결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의무를 이행 하고 있습니다.
- 3. 한국상조공제조합(주소: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86 4층(도화동, 창강빌딩), 홈페이지: www.kmaca.co.kr, 대표번호:1688-0972)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항에 따라 선불식할부거래업자가 폐업, 등록취소 등의 사유 가 발생한 경우 회원의 총 납입금의 50%를 피해 보상합니다.
- 4. 한국상조공제조합은 공제사고 발생 시 수혜자에게 등기우편 및 공제조합 홈페이지를 통한 공지를 하여야 하며, 이후 3년 이내에 공제금지급요구 등의 의사표시를 한 수혜자에 대해서만 공제금 지급 등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 보람상조그룹 전 사업장 총 선수금 및 관리방법

(총 선수금 : 2020년 9월 기준/총 고객 환급 의무액 및 상조 관련 자산 : 2019년 12월 31일 기준)

전 사업장	총선수금	총 고객 환급 의무액	상조 관련 자산
보람상조개발(주)	388,433,488,250원	253,784,870,650원	365,302,386,161원
보람상조라이프(주)	295,256,983,900원	178,690,596,690원	227,802,069,373원
보람상조애니콜(주)	20,346,065,000원	2,143,416,070원	8,328,780,315원
보람상조피플(주)	206,694,127,500원	157,868,729,440원	188,513,534,222원
한국힐링라이프(주)	44,241,749,608원	29,731,682,678원	24,424,933,663원
(주)재향군인회상조회	324,017,297,583원	250,901,461,035원	280,238,305,762원
한계	1 278 989 711 841원	873 120 756 563원	1 094 610 009 496원

- ※보람상조라이프㈜, 보람상조개발㈜, 보람상조피플㈜, 보람상조애니콜㈜, 한국힐링라이프㈜,
- (유재향군인회상조회는 공인회계사 회계감사를 받았습니다. ※2019년 12월 20일자로 한국힐링라이프㈜는 보람상조개발㈜로 인수되었습니다. 2020년 3월 4일자로 재향군인회상조회는 보람상조개발㈜로 인수되었습니다.인수 후 총 고객환급의무액 및 보람상조관련 자산의 변경 등은 외부 회계감사 후 반영되었습니다.
- 사산의 면경 등은 외부 회세검사 후 만영되었습니다.
  ※2010년 9월부터 [혈부개에 관한 법률]제 27조에 의거하여 각 사는 한국상조공제조합(www.kmaca.or.kr) 과 고객선수금의 50%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보람상조라이프㈜는 한국상조공제조합 (www.kmaca.or.kr)에 104.6억원을 출자하였습니다.
   보람상조개발㈜는 한국상조공제조합 (www.kmaca.or.kr)에 50.8억원을 출자하였습니다.
   보람상조피발㈜는 한국상조공제조합 (www.kmaca.or.kr)에 109억원을 출자하였습니다.
   보람상조매니콜㈜는 한국상조공제조합 (www.kmaca.or.kr)에 1억원을 출자하였습니다.
   한국힐링라이프㈜는 한국상조공제조합 (www.kmaca.or.kr)에 3억원을 출자하였습니다.

- ㈜재향군인회상조회는 한국상조공제조합 (www.kmaca.or.kr)에 1억원을 출자하였습니다.
- ※㈜재향군인회상조회는 고객불입금의 50%를 제 1금융권 하나은행에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한 지급 보증계약 또는 예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 환급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지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 따릅니다.
- -- 구체적인 제공물품 및 서비스 내용 등 :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람상조개발㈜는 한국상조공제조합 (www.kmaca.or.kr)에 50.8억원을 출자하였습니다.

강남 고객만족센터	02-6203-1009	안양 고객만족센터	0 3 1 - 4 5 7 - 7 1 4 2
강동 고객만족센터	02-522-7942	여수 고객만족센터	061-643-7942
강북 고객만족센터	02-2052-7942	원주 고객만족센터	0 3 3 - 7 4 7 - 7 1 4 2
강서 고객만족센터	070-4900-2745	의정부 고객만족센터	031-875-1009
광주 고객만족센터	062-226-7942	인천 고객만족센터	0 3 2 - 4 2 2 - 7 1 4 2
대구 고객만족센터	053-428-1009	일산 고객만족센터	0 3 1 - 9 3 2 - 7 9 4 2
대전 고객만족센터	0 4 2 - 2 2 2 - 1 0 0 9	창원 고객만족센터	055-264-7142
부산센텀 고객만족센터	051-365-0479	천안 고객만족센터	041-569-1009
서인천 고객만족센터	032-330-2527	춘천 고객만족센터	0 3 3 - 2 5 1 - 0 4 7 9
수원 고객만족센터	0 3 1 - 2 3 7 - 7 9 4 2	프라임호텔 고객만족센터	051-555-0479

# 보람상조 전국지점

강 동 지 점	02-563-0479	안 양 지 점	031-457-7142
거 제 중 앙 지 점	055-635-7142	안 양 중 앙 지 점	031-457-7142
거 제 지 점	055-635-7142	여 수 지 점	061-643-7942
경 기 북 부 지 점	031-875-1009	여 의 도 지 점	02-2690-0560
경 성 지 점	02-2672-1009	영 등 포 중 앙 지 점	02-2637-0479
광 주 지 점	062-226-7942	영 등 포 지 점	02-2672-1009
구 미 지 점	054-456-7142	오 금 지 점	0 2 - 5 2 2 - 7 9 4 2
군 포 중 앙 지 점	031-393-7142	왕 십 리 지 점	0 2 - 5 6 3 - 0 4 7 9
금 천 지 점	070-4900-2746	용 산 지 점	02-323-1009
다 산 지 점	031-553-7202	용 인 지 점	0 3 1 - 2 1 7 - 7 1 4 2
대 구 지 점	053-428-1009	울 산 지 점	0 5 2 - 2 6 0 - 0 4 7 9
대 전 지 점	0 4 2 - 2 2 2 - 1 0 0 9	원 주 중 부 지 점	0 3 1 - 7 2 1 - 0 7 1 6
동 수 원 지 점	031-237-7942	은 평 지 점	0 2 - 5 6 3 - 0 4 7 9
명 성 지 점	02-2636-7142	인 천 지 점	0 3 2 - 4 2 2 - 7 1 4 2
목 동 지 점	02-2690-0560	일 산 중 앙 지 점	0 3 1 - 9 3 2 - 7 9 4 2
반 포 지 점	02-6203-1009	일 산 지 점	0 3 1 - 9 3 2 - 7 9 4 2
부 산 지 점	051-441-7942	잠 실 중 앙 지 점	0 2 - 3 2 3 - 1 0 0 9
부 천 지 점	02-2693-0479	잠 실 지 점	02-323-1009
북 부 산 지 점	051-365-0479	종 로 지 점	0 2 - 5 2 2 - 7 9 4 3
상 암 지 점	02-2637-0479	진 주 지 점	055-746-0479
서 교 지 점	02-2637-0479	창 원 지 점	055-264-7142
서 대 문 지 점	02-2052-7942	천 안 지 점	041-569-1009
서 인 천 지 점	0 3 2 - 3 3 0 - 2 5 2 7	천 호 지 점	0 2 - 5 2 2 - 7 9 4 3
서 초 지 점	02-522-7943	춘 천 지 점	033-251-0479
수 원 중 앙 지 점	0 3 1 - 2 3 7 - 7 9 4 2	태 백 지 점	0 3 3 - 5 5 2 - 0 4 7 9
수 원 지 점	031-217-7142	평 택 지 점	031-237-7942
신 도 림 지 점	02-2636-7142	호 남 지 점	063-227-7142
신 림 중 앙 지 점	02-522-7854	( I R ) 망우지점	02-6203-1009
신 림 지 점	02-522-7854	(IR)원주지점	0 3 3 - 7 4 7 - 7 1 4 2
안 산 지 점	031-410-0479	(IR) 창 원 지 점	055-264-7142